

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9-53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자	거창군수
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법무부 권고에 따라 「범죄피해자보호법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는 국가가 구축·운영하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체제 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무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·통일적으로 지원을 수행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불필요한 용어 정의 정비(안 제2조)
- 나.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 추가(안 제7조제2항제4호)
- 다. 협의회 정기회 개최 횟수 변경(안 제10조제2항)
 - 1) 분기별 1회 ⇒ 반기별 1회
- 라. 민간단체 지원사업 구체화함(안 제15조)
- 마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과 중복되는 범죄피해 지원조항 삭제(현행 제17조·제1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4조·제5조·제33조·제34조
 - 2)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·제22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- 나. 예산조치 : 2019년도 예산 37,800천원 확보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19. 3. 11.~4. 1.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3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 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앞의 “제1장 총칙”, 제5조 앞의 “제2항 지역치안협의회”, 제15조 앞의 “제3장 민간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 등”을 삭제한다.

제1조 중 “범죄행위 피해자 및 민간단체”를 “민간단체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사회적 약자"란 아동, 청소년, 여성, 노인, 장애인으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.

제5조 제목 “(설치 및 기능)”을 “(지역치안협의회 설치·기능)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“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”를 “안전보호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(종전 제4호) 중 “협의회의 의장이”를 “군수가”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

제8조제2항 중 “의장은”을 “군수는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분기별 1회”를 “반기별 1회”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해야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실무위원회”를 “실무협의회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.

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5조(종전 제16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민간단체 지원)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사회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사업
2.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상담 사업
3.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 사업
4.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6조(종전 제15조)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별지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장 총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<u>범죄행위 피해자 및 민간단체</u>의 참여·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<u>사회적 약자</u>”란 아동·청소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·다문화가정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. 2. “<u>범죄행위</u>”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3. “<u>범죄예방 봉사활동</u>”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. 4. “<u>민간단체</u>”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. <p>제3조(군의 책무) ①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민간단체의 육성·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군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,</p>	<p><u><삭 제>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<u>민간단체</u>의 참여·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<u>사회적 약자</u>”란 아동, 청소년, 여성, 노인, 장애인으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군의 책무)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민간단체의 육성·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범죄행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제2장 지역치안협의회

제5조(설치 및 기능)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1.~4. (현행과 같음)
5.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6. (생략)

제7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는 의장은 군수가 되고,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거창군의회 의장
2.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
3. 거창소방서장

<신설>

4. 행정·치안·교육·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,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,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제8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

<삭제>

제5조(지역치안협의회 설치·기능)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1.~4. (현행과 같음)
5.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6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는 의장은 군수가 되고,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거창군의회 의장
2.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
3. 거창소방서장

4.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

5. 행정·치안·교육·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,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,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

제8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의) ① (생략)

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
③ (생략)

<신설>

제11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3조(필요경비 지원 등)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

제3장 민간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 등

제15조(민간단체의 요건)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~4. (생략)

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해야 한다.

제11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필요경비 지원 등)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<삭제>

<삭제>

제16조(민간단체의 요건)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~4.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보조금 등의 지원) ①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17조(범죄피해 지원)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피해(살인, 성범죄 피해자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를 입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심의를 거쳐 500만원 이내의 지원금(장례비와 위로금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에 한정한다.

③ 지원대상자 선정은 군수 또는 거창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추천서에 따라 추천하면 협의회에서 심의 선정한다.

제18조(지원금의 지원 제외) 군수는 제17조에서 정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5조(민간단체 지원) 군수는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사회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사업
2.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상담 사업
3.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 사업
4.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p>1. <u>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</u></p> <p>2. 「국가배상법」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</p> <p>3.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<u>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<삭 제></p>
---	--------------------

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제15조(민간단체에 대한 지원)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사회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사업
2.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상담 사업
3.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 사업
4.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가. 「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」 제4조제1항 중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가. 2019년도 예산 5천만원 미만임

나. 2019년도 본예산 : 37.8백만원

- 1)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(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) : 15백만원
- 2) 지역치안협의회 운영(일반운영비) : 17.8백만원
- 3) 지역치안협의회 운영(범죄피해자 지원) : 5백만원

작 성 자 행정과장 신영수